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76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산업통상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복귀기업의 국내복귀계획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확충을 국내복귀로 인정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추가됨에 따라 관련 제출서류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국내복귀 신청기업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
- 나.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신고 및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 신고 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확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

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

- 다. 첨단산업등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이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 신고 시
첨단산업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국내복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기재항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정비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함(별지 제1호·제4호
· 제6호·제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 전자우편 : gaehomin@korea.kr
- 팩스 : 044 -203 -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 4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